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  <div> <div>고용노동부</div> <div>한국판뉴딜</div> </div> </div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div> <div>고용노동부</div> <div>한국판뉴딜</div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도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. 1. 25.(화) 조간 *인터넷 2022. 1. 24.(월) 12:00 이후 / 총 12쪽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장 김정수<br>사무관 황현태<br>주무관 안영곤 | 044-202-8920<br>044-202-8923<br>044-202-8924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 장 설문수<br>부 장 이승국            | 052-703-0590<br>052-703-0595                 |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「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」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

-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-
- 컨설팅 신청기간: [1차] 1.26.(수)~2.15.(화) / [2차] 3.2.(수)~3.15.(화)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‘중대재해처벌법’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·기타 업종을 대상(50인~299인)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.

\*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추진(참조: 고용부 보도자료 1.10.)

-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속런 전문가들이 3~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,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.

\* (7대 핵심요소)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·위탁·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
- 특히,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(CEO)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.
-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, 중소기업중앙회\*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.

\* <참고1> 컨설팅 수행기관·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·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

-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,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.

-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(50인~150인)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.

\* <신청기간> ▲1차: 1.26.(수) ~ 2.15.(화) / ▲2차: 3.2.(수) ~ 3.15.(화)

\* <우선순위>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(50인~150인),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(順)

-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, 공단지역본부,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 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.

-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

-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,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,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·보급하고 있다”라면서

- “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### ※ 참고

1. 2022년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(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)
2.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
3.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
4.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
5.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
6. 안전보건자료 배송 서비스 활용 안내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사무관(044-202-8923), 안영곤 주무관(044-202-892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1** 2022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체(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)

**1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접수 담당(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)**

| 지역 구분    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            | 담당자     | 연락처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서울광역본부<br>(6개 기관)  | (주)바이오 에어<br>산업안전보건연구소     | 산업보건부           | 유선우 부장  | 010-4423-2583 |
|                    | 삼성기술안전(주)                  | 기업부설연구소         | 박종현 연구원 | 010-2247-1483 |
|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안전협회<br>서울지역본부         | 서울지역본부<br>안전기술국 | 이재혁 차장  | 010-9942-2831 |
|                    | (사)안전보건진흥원                 | 안전관리팀           | 이재현 팀장  | 010-4125-9580 |
|                    | 케이에스산업안전(주)                | 이사              | 최동기 이사  | 010-9224-5127 |
|                    | (사)한국안전보건협회                | 진단본부            | 백종권 대리  | 010-7448-3610 |
| 인천광역본부<br>(15개 기관) | 환경안전코리아(주)                 | 안전진단팀           | 김성우     | 010-6255-3455 |
|                    | (사)한국직업건강안전협회<br>직업건강안전연구소 | 건강안전연구소         | 조수현     | 010-9252-3405 |
|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보건협회                   | 보건관리팀           | 김유희     | 010-9029-0081 |
|                    | 산업안전환경기술원(주)               | 안전기술1팀          | 김민수     | 010-8953-8214 |
|                    | (주)대한안전기술연구원               | 안전지원            | 김혜영     | 010-2450-7102 |
|                    | 보건관리전문기관 벵                 | 대표              | 이승교     | 010-4719-8140 |
|                    | (주)산업안전기술연구원               | 기술1부            | 김영진     | 010-9757-1507 |
|                    | 삼성기술안전(주)                  | 전문위원            | 주장식     | 010-7116-5667 |
|                    | (주)한국안전                    | 안전지원부           | 이창훈     | 010-4785-0751 |
|                    | 주식회사한국안전연구소                | 안전1팀            | 임명환     | 010-5091-7460 |
|                    |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                | 안전기술국           | 최영욱     | 010-9489-2933 |
|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안전기술원                  | 안전기획부           | 심범석     | 010-3358-7979 |
|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안전기술(주)                | 전문위원            | 정현웅     | 010-8232-2922 |
|                    | (주)경인산업안전본부                | 대표              | 이재부     | 010-6325-7521 |
| 부산광역본부<br>(15개 기관) | (주)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박상덕 이사  | 010-3311-3190 |
|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보건협회<br>부산경남지역본부       | 보건관리부           | 배은주 차장  | 051-508-6088  |
|                    | 디에이치안전(주)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정희석 차장  | 055-724-0057  |
|                    | 한국안전연구원(주)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김원중 대표  | 055-734-7431  |
|                    | 베스트원 산업안전보건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김병효 차장  | 051-980-2499  |
|                    | (주)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황영문 대표  | 1544-1202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경동안전기술원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김지원 부장  | 055-297-8821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한국산업안전연구원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나형국 부장  | 051-504-9142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채수영 대표  | 051-553-6177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영남산업안전연구소            | 안전기술부           | 고효성 과장  | 051-556-9141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안전본부(주)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김종만 대리  | 051-866-3655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미래안전기술원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손용수 대표  | 051-916-0114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부산안전원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양위열 상무  | 051-714-2898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한국안전기술지원단            | 안전지원부           | 전재형 부장  | 1544-2264     |
| 대구광역본부<br>(5개 기관)     | 대한산업안전협회<br>부산지역본부      | 안전기술국           | 신종대 차장  | 051-804-2971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재해방지(주)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안성철 차장  | 055-339-4311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<br>대구지역본부   | 안전기술국           | 피재경 차장  | 010-3566-1203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          | 기술2부            | 김동일 차장  | 010-2810-6507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산업안전기술원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안진영 차장  | 010-2488-409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(주)한국안전기술원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김정현 차장  | 010-6470-5114 |
| 광주광역본부<br>(4개 기관)     | (사)대한산업안전협회<br>대구경북지역본부 | 경북산업보건센터        | 최병식 차장  | 010-8551-1656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RMS                   | 안전환경사업부         | 심승현 대리  | 061-691-5796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보건협회                | 보건관리팀           | 배철진 과장  | 062-519-236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안전관리원               | 기획관리팀           | 최나리 주임  | 063-224-6486  |
| 대전세종광주광역본부<br>(6개 기관) | 대한산업안전협회                | 안전기술1국          | 윤명규 부장  | 062-943-0156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| 세종/청주센터         | 김지남 팀장  | 043-853-0202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             | 대전충정지사          | 문진심 부장  | 043-287-1911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안전기술진흥원               | 총괄본부            | 김희진 본부장 | 042-824-3214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             | 기술부             | 김준열 차장  | 043-212-4611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보건협회                | 보건관리팀           | 우승현 파트장 | 042-933-32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한산업안전협회                | 대전지역본부<br>안전기술국 | 남인욱 부장  | 042-628-2160  |

※ 수행기관 접수 담당은 선정심사위원회 우선 협상 대상기관으로 미계약 시 변경 가능

## ②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접수 담당(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)

| 주관기관               | 접수·선정심사 권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| 접수·선정심사 권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광역본부<br>(임세훈 대리) | 서울, 서울남부, 서울동부, 강원 강원동부<br>(광역사업부: 02-6711-2855)    | 대구광역본부<br>(남희연 과장)   | 대구, 대구서부, 경북, 경북동부<br>(광역사업부: 053-609-0520)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광역본부<br>(김희진 대리) | 부산, 경남, 울산, 경남동부<br>(광역사업부: 051-520-0535)           | 인천광역본부<br>(김수정 주임)   | 인천, 경기, 경기북부, 고양파주,<br>경기중부, 경기서부, 경기동부<br>(광역사업부: 032-5100-528) |
| 광주광역본부<br>(신호중 대리) | 광주, 전북, 전북서부, 전남, 전남동부, 제주<br>(안전인증부: 062-949-8726) | 대전세종광역본부<br>(김형진 대리) | 대전·세종, 충남, 충북, 충북북부<br>(광역사업부: 042-620-5615)                     |

## ③ 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(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)

| 담당부서  | 담당자    | 연락처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력정책실 | 노민규 대리 | 02-2124-3273 | 신청서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<br>광역본부별 구분 후 신청서 송부 |

## ※ 컨설팅 신청 기업 선정 기준(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적용)

- ❖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등 고위험 ②중규모 기업(50인 ~ 150인)  
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기업(안전관리 위탁 미실시) 順

## 참고 2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

###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(기업용)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<br>기업         | 기업명(본사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총 근로자수<br>* 본사 및 공장(지점, 지사) 소속 전체 근로자수 합산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<br>기업<br>정보   | [신청 기업의 공장·지점·지사 등 사업장 현황 기재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[신청 시 유의사항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</li> <li>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</li> <li>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</li> <li>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</li> </ul> |         | ※ 지원대상: 제조업·기타사업 <u>기업별 300인 미만</u> (300인 이상 기업 지원 불가)<br>※ 지원방법: 본사 및 본사에서 지정하는 1개 사업장 컨설팅(본사 참여 필수) |
|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지정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지정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지정 사업장개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: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기관 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선임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※ 해당사항 체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컨설팅<br>사업장<br>정보 | 사내 협력업체 유무: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※ 해당사항 체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|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자우편 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022년도 고용노동부-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」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본사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|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공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신청서 작성<br>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<br>공단 광역본부 | 서류검토<br>공단 광역본부 | 심사<br>공단 광역본부 | 결과통지<br>공단 광역본부 |

안전관리

## 2022년 |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

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(50~299인, 제조·기타업종) 컨설팅 지원  
\* '22년 사업예산(한시) : 58억원(사업비 56억원, 운영비 2억원)

### 사업계획

#### 대상 기업

-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, 규모 중소기업(50~299인) 2,240개소
- 컨설팅 신청 기업 중 우선순위\*에 따라 대상 기업선정
- \* 1 고위험 → 2 소규모(50~150인) → 3 안전관리자 자체선임(안전관리 미대행)順
- \*\* [제외] 대기업 2,704개소, 현장지원단 컨설팅('21년, 400개소), 화학업종 컨설팅('22년, 500개소) 등

#### 컨설팅 내용

- 안전보건관리체계(7대 핵심요소) 구축·지원  
예)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, 매뉴얼·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

#### 컨설팅 일정 및 방법

- 컨설팅('22.2~6월), 모니터링(대상 5~10%, 9월), 결과 평가(10월)
- \* 세부일정

사업 수행 기관 공고 (1.3.)

사업 설명회 (1.7.)

수행기관 선정·계약 (1.28.)

기업 컨설팅 신청 (1월말)

수행요원 직무교육 (2월 초)

컨설팅 개시 (2월 중)

- 민간 수행요원(2인 1조 편성), 대상 기업별 4회 이상 방문
- \* 컨설팅 수행 시 기업 본사에서 반드시 참여하고 사업주(CEO) 등 연달 2회 원칙
- 컨설팅 신청(접수) 담당

| 주관기관               | 접수·신청심사 권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| 접수·신청심사 권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광역본부<br>(임세훈 대리) | 서울, 서울남부, 서울동부, 강원, 강원동부<br>[광역사업부] 02-6711-2855   | 대구광역본부<br>(남희연 과장)   | 대구, 대구서부, 경북, 경북동부<br>[광역사업부] 053-609-0520                   |
| 부산광역본부<br>(김희진 대리) | 부산, 경남, 울산, 경남동부<br>[광역사업부] 051-520-0535           | 인천광역본부<br>(김수정 주임)   | 인천, 경기, 경기북부, 고양파주, 경기동부, 경기서부, 경기동부<br>[광역사업부] 032-5100-528 |
| 광주광역본부<br>(신호중 대리) | 광주, 전북, 전북서부, 전남, 전남동부, 제주<br>[안전인종부] 062-949-8726 | 대전충청광역본부<br>(리형진 대리) |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, 충북북부<br>[광역사업부] 042-620-5615                 |

### 운영사항

#### 운영위 개최

- 컨설팅 사업개시 후 지역별 운영위원회 개최(매월)
- \* 기관·공단·고용부 기관별 컨설팅 수행현황 점검, 애로사항 확인·개선, 지역 내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,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 조성

#### 우수사례 발굴

- 우수사례 발굴·확산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도 적극 활용

안전관리

##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

※ 시행일 : '22. 1. 27.(50인 미만 사업장 등 '24. 1. 27.)

### 중대재해처벌법이란? (중대산업재해 부분)

#### 1

-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
-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
**사망시**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
**그 외**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· 징역과 벌금은 일의적병과 기능,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/2 까지 가중

**양벌규정(법인)**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,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

### 중대산업재해란?

#### 2

- 산업재해 중

[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]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·부상·질병을 의미

-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
-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
-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\*

\* 1년간 동일할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(약 200여개의 화학적인자) /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/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/ 독성간염 / 혈액전파성 질병(B형간염, C형간염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) / 켈프스피리중 / 탄저균 독 브루셀라중 / 레지오넬라중 / 감압병·공기색전증 / 산소결핍증 / 급성방사선증 무형성빈혈 / 열사병

###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?

#### 3

**사업주**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(개인사업주에 한함)

**경영책임자** 사업을 대표·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(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)

※ 단,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

● 사업주·법인·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

**종사자** 근로자,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·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

2022 교육혁신실-30

##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

### 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?

3
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    -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    - 안전·보건업무 총괄·관리 전담조직(500인 이상, 종합건설회사사공순위 200위 이내)
    -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    -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
   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)
   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배치(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 이상)
    -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    - 중대산업재해 발생(급박한 상황 포함)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
    - 도급, 용역,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관리비용·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, 이행여부 점검

\*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
  -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  -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  - 안전·보건관 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    -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(안전·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위탁가능)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
    - 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, 5년간 보관하여야 함(소상공인 제외)

### 안전보건교육과 공표

4

- 중대산업재해 발생 → 안전보건교육(20시간) 의무(교육비용 본인부담)
  - 주요내용**
    - 안전·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방안
    -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방안
  - 주요절차**
    - 교육기관,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(중대산업재해 발생 7관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, 연기요청(1회에 한함)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
- 중대산업재해 발생 +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+ 형의 확정 + 법무부장관의 통보 →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(1년간 게시, 소멸기회 부여)
  - 주요내용**
    - 해당 사업장의 명칭
    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·장소
    -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
    -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(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반사항 포함)
    -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

##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

###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(www.koshasafety.co.kr)이란?

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, 안전보건관리체계, 보도자료, 참고자료 등을 **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**

- 법령 자료 (법, 시행령, 해설서 등)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(가이드북, 자율점검표, 자율진단표)
- 보도자료 • 홍보·안내 자료 (시행 안내서, 안내 동영상, 리플릿 등)

누리집 QR



###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

1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메인화면 연결배너 **클릭**



2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→ 안심일터 →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**클릭**



3 안전보건공단 누리집

- 1 자주 찾는 메뉴 → 중대재해처벌법 **클릭**
- 2 팝업존 → 연결배너 **클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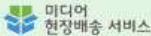


•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화면



• 연결 배너 이미지





##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택배로 받아보세요!

**안전보건자료**

**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란?**

-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자료(포스터, 표지 등)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
- 주문 후 2~3일 내 사업장에 택배 도착
- 자료 비용은 무료, 택배 배송비\*는 신청자 부담(착불)
  - 배송비는 택배상자 1건 당 3,000원이며 신청수량에 따라 배송비용 상이
  -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사 정책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
- 3회 주문 시 무료 배송쿠폰 발급(다음 회차 주문 시 쿠폰 자동 적용, 쿠폰 사용 후 재적립)
- 월별 자료수량 210건 신청 가능(자료종류 선택 제한 없음, 자료별 제한 수량 상이)





<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제공 자료 예시(표지, 포스터, 책자) >

**이용방법**

-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'미디어 현장배송' 검색 혹은 인터넷 창에 주소(<https://media.kosha.or.kr>) 입력
- 2 화면 우측 상단 [로그인] 클릭(별도 가입절차 없음)
  - 1)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자등록번호, 2) 사업장관리번호(산재보험), 3) 사업개시번호로 로그인
- 3 상품 선택 및 수량 신청, 배송정보 입력(온라인 쇼핑몰과 유사)
  - 현장배송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공단에서 개발한 자료 중 일부분만을 제공
  - 공단에서 제작한 모든 자료(전자파일)는 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
- 4 택배 도착 시 택배비 착불 지불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자료 뒷면 및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

안전보건자료

##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택배로 받아보세요!

**로그인**

- 1 첫 화면 우측 상단 [로그인] 클릭
 

로그인
- 2 바뀐 화면 중앙 동봉기 클릭
 

SYSTEM LOGIN  
 로그인
- 3 팝업 화면에서 폼보박스 선택 후 해당 번호 입력
 

폼보박스 선택
- 4 사업장 선택  
(여러 사업장이 검색되는 경우 소속 사업장 선택)
 

사업장 선택
- 5 로그인(LOGIN) 클릭 서비스 이용
 

SYSTEM LOGIN  
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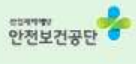
**서비스 이용**

- 1 상품 장바구니에 담기
 

장바구니 담기
- 2 장바구니 확인 후 주문하기 클릭
 

주문하기
- 3 수령지 정보 입력, 주문 최종신청
 

주문최종신청



2021-교육혁신실-337

